

산업통상자원부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무위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연 월 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우리 정부는 탈탄소와 수소경제활성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강한 의지와 제도적 기반마련을 적극 표명하였음. 특히,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데, 발전효율이 하락하고, 비저감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예상되는 노후 LNG 발전설비는 설비대체 등 관리가 필요함.

그러나 장소·용량·원동력의 종류가 동일한 발전설비 대체건설에 적용가능한 규정이 미비하여 노후 설비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불분명한바, 기존 변경허가 사항에 주요 원동력 설비를 추가하여 장소·용량·원동력의 종류가 동일한 설비대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의 미비사항을 보완할 필요 있음.

이에 장소·용량·원동력의 종류가 동일한 노후 발전설비전체를 새롭게 대체하는 경우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변경허가 득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5조 제1항 제3호 라목 신설)

2. 주요내용

가. 노후 발전설비의 주요 원동력 설비(터빈과 보일러 및 발전기 전체)를 변경하는 경우를 변경허가 시 중요사항으로 규정하여 변경허가 대상되도록 관련 조항 신설(안 제5조 제1항 제3호 라목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5. 10. ~ 6. 2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주요 원동력 설비(터빈과 보일러 및 발전기 전체)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변경허가사항 등) ① 법 제 7조제1항 후단에서 “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조(변경허가사항 등) ①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발전용 전기설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3. ----- -----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u><신 설></u>	라. 주요 원동력설비(터빈과 보일러 및 발전기 전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